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
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. 2. 16. 2010고합16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 외 1인

【검사】 김선문

【변호인】 변호사 이은중 외 2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)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(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)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【주문】

【이유】

【주문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